



환자용 목욕침대

Shower Trolley

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

환자용 목욕침대란?

거동이 불편한 노인, 장애인 등 환자 목욕 시 간편하게 조립하여 실외나 방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침실, 거실, 욕실 등에서 목욕하는 설비로써 침대 본체의 높이를 목욕을 도와 줄 사람의 높이로 맞추어 샤워기로 이용하여 환자에게 목욕을 시킨다.



환자용 목욕침대 종류

- 전동식 샤워트롤리 : 리모콘 등 조작스위치로 이용하여 자동으로 침대의 높낮이 및 기울기를 조절
- 유압식 샤워트롤리 : 페달을 밟아 수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
- 환자용 목욕의자 :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목욕실 내에서 이용하는 목욕의자



환자용 목욕의자





주요 위험요인

- ❑ **넘어짐**
 - 환자 목욕 보조 중 바닥의 물기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짐
- ❑ **부딪침**
 - 목욕침대로 옮기거나 목욕을 마친 환자를 침대로 이동하던 중 침대 모서리 등 돌출부에 부딪치거나 충돌
- ❑ **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**
 - 목욕시설 이나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요통 발생
- ❑ **감전 · 끼임**
 - 목욕침대의 높낮이지지대, 사이드레일 부위에 손 끼임

안전대책

- **넘어짐 예방**
 - 목욕 후 바닥의 물기를 곧바로 제거
 - 목욕 시 주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움
 - 목욕탕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미끄럼방지용 스티커, 미끄럼주의표지 등을 부착
 - 목욕탕 등 출입 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
- **부딪힘 예방**
 - 침대 모서리 등 돌출부에 충격완화용 쿠션을 부착
 - 충돌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치우고 침대주변을 정리정돈
 - 이동경로의 통로 문틀 등 장애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조치 실시
- **요통 예방**
 - 목욕 시키기 전 · 후 스트레칭 등 운동 실시
 - 샤워트롤리 등 목욕 보조설비의 적절한 사용으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위험물 제거
 - 환자를 일으킬 때에는 몸에 최대한 밀착시킨 후 하체의 힘을 사용
 -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옆 침대로 옮길 시에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부축
- **감김 · 끼임 예방**
 - 사이드레일 작동 시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
 - 목욕침대 높낮이 조절 시 높낮이조절지지대 등 협착위험 부위에 접근 금지



두 명 이상이 함께 부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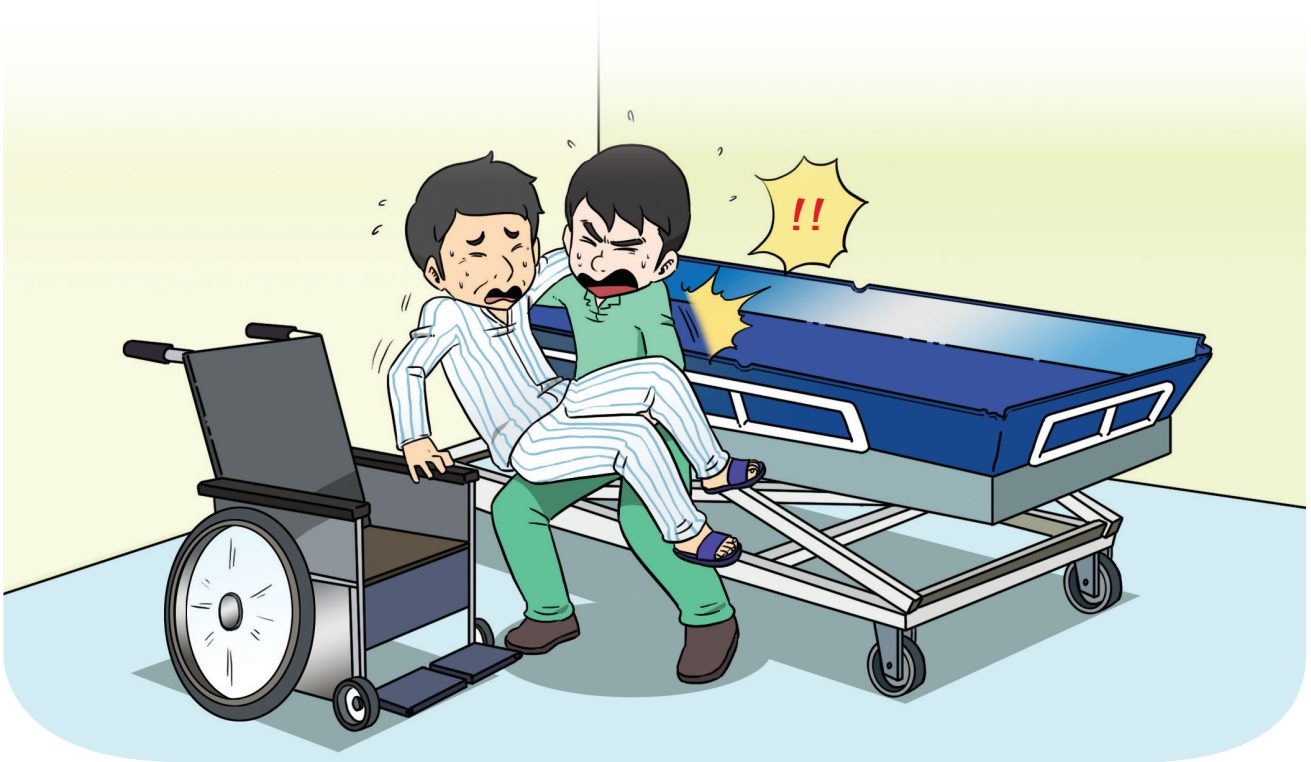




재해사례 : 환자를 목욕침대로 옮기던 중 요통

개요

○○○요양원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서 목욕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로 들어 올리려 무리한 힘을 주다가 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를 삐끗하여 재해를 당함



발생원인

- 불안정한 자세로 단독으로 무리한 힘을 가함
- 목욕 전용 보조테이블 미사용
- 환자부축방법 등 사전 안전교육 미실시

예방대책

- 환자를 부축할 때 단독작업을 지양하고, 2인이 작업하여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함
- 침대에서 바로 목욕 전용 보조테이블로 옮기는 등 환자의 이송방법의 간편화
- 신규 작업자의 환자부축방법 등 사전 안전교육 실시





안전수칙

- 목욕 후 바닥에 있는 물기를 즉시 제거한다.
-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경고(주의)표지를 부착 한다.
- 바닥의 이물질 또는 물기를 즉시 치운다.
- 환자 부축 시 몸에 밀착시킨 후 하체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.
- 환자 부축 시 2인 1조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작업을 실시 한다.
-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.
- 신발을 꺾어 신거나 슬리퍼 착용을 금지 한다.
- 환자용 목욕침대의 오동작으로 인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방법 등의 사전 숙지를 철저히 한다.
- 목욕 시 환자와의 의사소통으로 통해 함께 보조를 맞춘다.
- 작업 전 · 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몸의 유연성을 유지한다.



목욕 후 바닥 물기 제거



미끄럼방지 조치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(안전 · 보건표지의 부착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(작업장의 바닥)
- KOSHA GUIDE G-11-2009 전도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안전가이드

